挺身隊 國家차원 배상 마땅

韓-日「法的문제」 알아본다

焦点 동아 1992. 1. 16

65년協定때 논의조차 안된사항
韓日청구권 협정과는 별개 문제

정신대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韓日간의 법적피해보상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정부간 보상관계를 마무리지은 지난65년 韓日청구권협정의 효력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미야자와수상은 최근『65년 협정으로 국가차원의 청구권은 마무리됐다』며『다만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있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당국에서도 65년 협정으로 국가간 청구권문제는 일단락돼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내 법학자와 법조인들의 견해는 다르다.

서울대 白忠鉉교수(국제법)는『65년 협정 당시엔 정신대문제가 정식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었다』며『이문제에 대해선 아직 국가차원의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볼수없다』고 말했다.

白교수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정신대의 존재자체를 부인해오던 일본측이 이제와서 65년 협정을 들먹이며 국가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白교수는 또 정신대문제는 지금까지 일본측이 한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적이 없는 식민지배의 불법상을 명백히 입증해주는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80년대초부터 사할린동포법률구조활동을 해온「재일본국 침략청산촉구 한민족회」회장 池益杓변호사도 같은 견해.

池변호사는『정신대문제와같은 비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외교보호권 포기를 규정한 65년 협정에 의해서도 결코 소멸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池변호사는 일본측이 정신대문제를 개인적인 청구권의 차원으로 몰고가려하는데에는 흉계가 담겨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일본측은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했을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중에서도 불행했던 과거가 드러나는것을 꺼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것이라는 계산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池변호사의 추산에 따르면 정신대 피해자들은 17만~20만명. 따라서 1명당 최저 2천만엔씩 배상한다하더라도 전체배상액은 4조엔(한화 24조원)에 이른다는게 池변호사의 설명이다.

정신대문제에 관해「사과 보상」이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대해서도 池변호사는 불만이다.

비인도적 불법행위인만큼「사죄 배상」이라는 용어를 써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白교수는 법적으로 다소 복잡한 설명을 요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상이라는 개념에는 배상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므로 배상책임보다는 보상책임을 추궁해야 더많은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수 있다며 용어는 크게 문제되지않는다고 밝히고있다.

아무튼 향후 정신대문제에 대한 법적처리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게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여기에는 과거 獨逸이 2차세계대전당시 유태인학살책임및 점령국 국민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책임에 대해서 개인적인 배상도했지만 전쟁책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가적차원에서 막대한 금액을 보상해준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신대문제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해 현재 민간차원에서는 대책협의회가 구성돼있지만 지난해10월 44개 유관민간단체가 연합해 창립한 對일본국 침략청산촉구 한민족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대문제에 대한 법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이다.

이 단체는 창립직후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 정신대 문제와△사할린동포 문제△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한국인 전범처리문제△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등을 포함한 일제 식민지배및 전쟁피해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한 정신대 문제를 포함한 … 불법행위 … 임추궁은 … 책임소재 … 가 있는 … 를 해결 … 지와 대 … 요하다 …